

대신대학교 예배학점 운영 규정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대신대학교 학칙 제44조(예배학점)에 의거하여 대신대학교 학생들의 경건훈련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천근거) 학생의 경건훈련을 위하여 채플 및 개강수련회, 교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예배학점은 각 학과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학점은 Pass(P), None Pass(NP)로 표기한다. 예배학점은 채플 참석과 개강수련회 참석을 중심으로 교회봉사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제3조(채플)

1. 학기 중 매주 화~토요일 정규예배를 실시하며, 모든 학생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규예배 강사는 교내·외에서 균형있게 초빙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학생(실천)처 예산에 포함한다.
3. 예배 출석은 학생증으로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예배 성적 Pass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학>

신학과 : 75% 이상 참석 (단, 4학년 2학기 : 50% 이상 참석)

일반학과 : 1-3학년은 40%이상 참석 , 4학년은 30%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주말수업 학생 : 1-4학년 주말경건회 총 이수시간의 70%이상 참석(개정 2018.5.18)

<신학대학원> - 75%이상 참석(단, 3학년 2학기 : 50%이상 참석)

5. 일반학과의 경우 학생(실천)처에서 준비한 양식에 따라 사회봉사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 채플 Pass 기준의 30%까지 인정할 수 있다.

※ 30% 인정기준 - ① 1일 최대 사회봉사 인정 시간 : 4시간까지 인정

② 사회봉사 최대 인정일수 : 7일간

제4조(개강수련회)

1. 매 학기 개강수련회를 실시한다.
2. 개강수련회는 예배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된 국내·외 강사를 초빙하도록 한다.
3. 개강수련회에는 모든 학생(신학대학원 포함)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유고결석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그리고 이외 사유로 불참한 학생은 예배위원회의 지도를 받기로 한다.

제5조(교회봉사활동) - 삭제 (2023.05.)

제6조(유고결석과 2시간 인정)

1. 학기 중의 채플과 개강수련회 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유고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단, 사유서 제출은 사유발생 2주 이내에 학생(실천)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사유	기간	제출증빙서류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당기간	입원확인서
배우자, 자녀, 부모의 중병으로 인한 입원	2주	입원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조부모,부모,외조부모,장인,장모,시부모,형제,자매,배우자,배우자의형제자매, 자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사망 진단서 또는 행정관서의 확인서
본인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소집인 경우	해당기간	교육참석 확인증
국가공공기관의 공무로 인한 출두지시의 경우	해당기간	출두 요구서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	예식순서지 또는 청첩장
본인의 출산	4주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1주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생회 행사 참가자 경우	해당기간	학생회 확인공문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 경우(정기연주 당일, 현장실습 등)	해당기간	학과협조 공문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해당기간	신체검사 확인증
졸업예정자의 취업 및 진학 시험응시 경우	해당기간	응시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노회목사후보생고시응시	해당기간	응시확인서
생계형 취업자(아르바이트) 중 오전근무자(근로시간 : PM 18:00 - AM 11:00)	해당기간	근로계약서 또는 최근6개월 급여명세서
기타 학생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학생처장 승인(관련증빙서류)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인 경우 4회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음. 1-3회는 인정 안 됨.

2. 채플 및 개강수련회에서 성가대와 찬양팀 봉사자에게는 1회 2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성가대 - 본인의 소속 학과와 학년에 봉사 할 경우
- ② 찬양팀 - 본인의 소속 찬양팀으로 봉사 할 경우

3. 아래와 같이 경건회 제외대상자는 매 학기 학생(실천)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6.3.1.)

제외 대상자	제출증빙서류
최근 1개월 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자	병원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및 학부(과)

	협조 공문
최근 1개월 내 중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자	입원 및 수술 확인서 및 학부(과) 협조 공문
최근 척추 수술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앉기 어려운 자	입원 및 수술 확인서 및 학부(과) 협조 공문
장애학우로서 예배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	장애인 증명서 및 학부(과) 협조 공문

제7조(군입대자에 대한 채플 인정)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말까지 경건회에 참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 휴학일부터 경건회 종강까지 사유처리 하도록 한다. (단, 수업일수 2/3가 경과한 후 군 휴학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함.)

제8조(장애학우 채플)

학부 및 신학대학원 장애학우의 예배 시간은 전체 **25%이상** 참여하여 예배학점 'Pass'를 하여야 한다.(단, 장애인 증명서 제출한 경우 인정함.)(개정 2016.3.1.)

제9조('NP'예배학점 취득생을 위한 경건회 미이수 훈련 및 제재조치)

1. 채플과 개강 수련회 출석 일수가 미달된 학생은 'NP' 학점으로 처리한다.
2. 'NP'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본인의 출석관리는 홈페이지 학사정보 서비스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3. 예배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의 기말고사 종료 후 방학이 시작되는 첫 주간에 아래 기간 동안 실시되는 경건회 미이수 훈련에 참석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P'를 취득할 수 있다.

① 학부 신학과 : 4일간

② 학부 일반학과 : 2일간

③ 신학대학원 : 4일간

④(신설)당해학년도 졸업예정자가 경건회 미 이수 훈련을 통해 당해 및 직전학기(2학기) 예배학점을 취득하고도 여러 학기 예배학점 Non-Pass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한**다. (단, 해당졸업학년도 졸업사정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 못할 경우 예배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2016. 6.1)

1) 예배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봉사활동을 한 후 봉사확인서를 학생처에 제출한다. 단 봉사활동은 교내봉사도 인정할 수 있다.

4. 예배학점을 'NP'로 받은 자는 졸업학기 이전에 **경건회 미이수 훈련**을 통해 반드시 'P'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5. 지나간 학기에 'NP' 예배학점을 받은 학생은 불참 시간을 계수한다.(단, 2학기 이하로 제한한다.)

6. (삭제 2016.3.1.)

7. (삭제 2018.8.27.)

8. (삭제 2016.11.28)

9. 경건회 예배 출석 시 타인의 출석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 출석 할 경우 본인 및

대리 출석자 당해학기 예배학점을 무효처리 한다.(신설 2016.3.1.)

제 10조(규정의 개정) (신설 2015. 8.28)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배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5. 8. 28)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신설 2015. 8.28)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